

2026년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2. 27.

경 상 북 도 지 사

I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II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2. 27.(금) ~ 2026. 3. 16.(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신청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일자리창출
사업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성

→

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 문의처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결과통보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결과 통보

III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IV 사업개요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지원

구 분	SVI 탁월	SVI 우수	일반기업 (SVI 양호이하)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 지원금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 174시간)으로 일정액 지원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비례지원
- 참여근로자의 결근, 조퇴·지각(유급휴가제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근무시간 적용

- 지원조건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 신규고용 6개월 후* 매월 기업의 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급
 - * 최초 6개월분 임금은 일괄 신청 및 지급(이후 매달지급)
- 신규고용일이 공고 이후 약정이전인 경우 고용월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나, 지원금은 약정월 이후분만 지급

※ 2026년 경상북도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에 따라 일정부분 변동될수 있음
(해당 사안 발생시 추가 계획 수립 및 시행 가능)

-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판단시점 : 공고한 월의 전월 말 기준
 - *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용요건이 지원 개시 이후 미충족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중지하고 요건을 다시 갖춘 시점부터 지원
다만, 미충족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자체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없이 계속 지원
-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인 기업
-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④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 4)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⑤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지원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예비2년 받은 기업이 인증으로써 지원신청가능)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⑦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
- ⑧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⑨ 그외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VI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기업 선정 및 지원인원 배정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사항 :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규모(지원인원)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브리핑(대면심사) ※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 지원인원 규모는 종합점수,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성과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 평가
기업혁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 평가	

○ 기타사항

- SVI 성과평가 “탁월”, “우수” 기업 우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①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③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④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아래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다만, 해당지역·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지원가능
 -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 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 ②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③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 지원인원 결정(조정)

○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인원 이내에서 다음 기준으로 결정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원칙
-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 배정 가능

VII 참여근로자 선발기준

□ 모집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 수급받고 있거나, 취업지원서비스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제외사유 ※

- ①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 ② 다른 직업(주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자(고용보험기준)
- ③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 ⑤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참여가능한 경우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고용중인자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
(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만 인정)
 - 국민취업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 15시간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 후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 ⑥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⑦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⑧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⑨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 ⑩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⑪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 ⑫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1. 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 재정상태 확인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동의
- ② 기업 유급근로자 확인 :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 동의
-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2. 신청서류

- ①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1)
- ② 사업계획서(붙임2)
- ③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자료(붙임3-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 ④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4)
- ⑤ 사회적가치(SVI) 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붙임5)
- ⑥ 유급근로자 명부(붙임6), 임금대장 사본, 취약계층 증명서류 사본
 - 유급근로자 명부는 2026년 1월 31일 기준, 임금대장은 최근 1개월분
- ⑦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25.2월 ~ '26. 1월)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자료제출
- ⑧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⑨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⑩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 ⑪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 SEIS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유의사항(공통사항)

○ 제출부수 : 각 1부 (해당 시 · 군에 제출)

IX 기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X 문의처

-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가치경제활성화팀(☎ 054-880-2618)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270-3923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4
경주시	경제정책과	779-6234	영양군	농촌경제과	680-6322
김천시	경제정책과	420-6237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4
안동시	신성장산업과	840-6022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370-2235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03	고령군	인구정책실	950-6254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639-6104	성주군	기업지원과	930-671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54
상주시	인구정책실	537-7142	예천군	지역경제과	650-686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231	봉화군	미래전략과	679-6188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6	울진군	인구정책과	789-6472
의성군	농업정책과	830-6506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790-6272

[붙임 1] 신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input type="checkbox"/> 예비 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2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3년차	
	부처형	<input type="checkbox"/> 예비 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2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3년차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인증 1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 2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팩스)	Tel. (Fax.)
전자메일주소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명(참여 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12개월)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 지원 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신청내용					
신청인원					
사업내용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알선 등의 여부 ()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 ④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분) 확인자료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 2)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7)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알선 등의 여부: 참여근로자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을 원할 경우 동의 여부 체크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p>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p> <p>-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p> <p>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분류</th> <th>평균단가</th> <th>산출근거</th> <th>연매출액</th> </tr> </thead> <tbody> <tr> <td>문구류</td> <td>2,000원</td> <td>2,000X5,000개X12개 월</td> <td>120,000,000 원</td> </tr> <tr> <td>의류</td> <td>30,000원</td> <td>30,000X500개X12개 월</td> <td>180,000,000 원</td> </tr> <tr> <td>전자제품 액세서리 류</td> <td>50,000원</td> <td>5,000X2,000개X12개 월</td> <td>120,000,000 원</td> </tr> </tbody> </table>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 월	120,000,000 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 월	180,000,000 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 월	120,000,000 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 월	120,000,000 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 월	180,000,000 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 월	120,000,000 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붙임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최근 6개월)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 가)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다) ※ 매입가격 : 1kg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kg 당 600원)

[붙임 3-1]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p>()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p>				

[붙임 4]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 의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붙임 5] 사회적가치(SVI) 측정 보고서

1 보고서 작성서식(기업용)

※ 작성요령

□ 공통사항

- 보고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6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5년)를 의미
-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i>작성요령1</i>		설립일	<i>작성요령2</i>	
주 업종	<i>작성요령3</i>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 번호	<i>작성요령4</i>		인증(지정) 유형	<i>작성요령4</i>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 폰)		
주소	<i>작성요령5</i>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i>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i>				
매출 및 영 업이익 (단위: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p>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 년 월 일</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대표자 (서명) </p>					

2. 측정지표

측정지표	1.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점)
------	---------------------------

판단기준	내용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 가치	제품 서비스	생산
		판매
	이용자	
	기타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 사항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p>※ 필수 확인사항(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기업은 3개 항목(제품·서비스, 이용자, 기타) 모두 작성할 필요 없으며, 항목별 실적이 있는 기업만 기재</p>												
	<p>【 기업 작성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90%;">내용(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품·서비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생산</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td> </tr> </table>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자</td> <td>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예시)	제품·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생산</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td> </tr> </table>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구분	내용(예시)											
	제품·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생산</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td> </tr> </table>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p>○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반영 수준과 이용자(수혜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제품·서비스의 기획·개발·생산·유통·판매·관리에 이르는 과정 상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 - 동일 과정상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구매자, 수혜자, 참여자 등)가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 													

○ 증빙자료

- 제품·서비스 소개서(홍보 브로슈어 등), 생산·판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 관련 실적 증빙자료
-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및 파급효과 등 증빙자료

측정지표

2.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판단기준	내용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부가적인 일자리창출	
	구성원 성과급	
	교육훈련비용	
	시설비투자 등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자	
	지역사회에 투자	
	기부실적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자원봉사실적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p>	<p>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대상연도(2025년)와 전년도(2024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증가 유무를 기재(고용보험내역 등재인원) (예) 2024년(12월: 10명 → 2025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 - 증빙자료: 2024, 2025년도 12월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p> <p>②구성원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예) '25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 증빙자료: 2025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직접지급 외 내역은 지양</p> <p>③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예)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p> <p>④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예)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p>
<p style="text-align: center;">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p>	<p>①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예)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p> <p>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예)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4년 내)</p>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p>	<p>○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예)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p>

○ 증빙자료

- 조직 내부활용: 2024, 20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25년 12월 임금대장 및 성과급 지급 내역 증빙자료, 2025년 직원대상 교육비 지급내역, 2025년 시설비 투자내역 등
- 조직외부활용: 기부금 영수증,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공헌(봉사활동) 결과자료(사진, 보고서, 공문 등)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측정지표

3.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	
	•	
	•	
	•	
	•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작성사항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수준	①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협의체는 이들 조직의 네트워크(당사자조직)를 의미 ② 협력활동의 인정범위는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활동만 인정합니다. (주 사업영역 외 기관차원의 봉사활동 및 대표자 재능기부 등은 불인정) ③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④ 사회적경제기업 간 구매·판매실적도 협력활동 내용으로 인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① 지역사회는 기업소재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범위를 의미 ② 협력활동 인정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당사자조직 협의체 외에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③ 지역사회 기관 간 정기적 판매·구매실적은 협력활동으로 인정합니다. ④ 또한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기업 작성예시 】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OO 사회적협동조합	돌봄서비스 표준화 및 브랜드화,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1회
□□ 사회적기업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 미술, 감각 재활 등 일상훈련 공동프로그램 진행	연 1회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 증빙자료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회의록, MOU문건, 보도자료, 활동사진, 회의 참석 공문, 협력활동 보고서 등)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기업이 제시한 실적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건만 인정

측정지표

4. 혁신노력도 (10점)

판단기준

내 용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
-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판단 기준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기업이 직시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노력·활동 등 ②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③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④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⑥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⑦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결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따른 결과·실적 등 ② (신상품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③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④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⑤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⑥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적재산권, 실용신안 내역, 기업 수상실적 등 ⑦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 증빙자료

-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6]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연번	성명	성별	출생년도	입사일	고용형태 (직종)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시간(주)	월평균 임금 (천원)	정부지원여부 1. 사회적기업 2. 기타관련
1	김길동	남	1970	2011.3.1	일반직 (사무직)		40	1,200	1. 일자리창출
2	홍길순	여	1966	2012.3.1	기간제 (단순노무)	1, 3	20	700	2. 취약계층 지원사업
3									
4									
5									
6									
7									
8									
9									
10									

※ 작성방법

-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등기임원(이사, 감사) 제외

※ 단,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포함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입사일: 고용보험 가입일자(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

-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일자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